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57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임광현·황정아·조인철

정일영 · 유동수 · 이정문

송재봉 • 박민규 • 정준호

안규백 • 차지호 • 정진욱

박찬대 · 강준현 · 박희승

최기상 • 임미애 • 조계원

김남희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식, 집합투자기구,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하여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며,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모든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금융투자결손금 중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하고 이전에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음.

한편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이 가능한 기한이 5년으로 제한된 우리 나라와 달리, 주식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미국의 「연방소득세법 (Internal Revenue Code)」은 자본이익 내에서 통산 가능한 자본손실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손실은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독일 또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이월공제 기간을 2배 연장하여 금융투자이월결손금의 대상을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10년 이내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으로 확대함으로써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(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).

법률 제 호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7조의4제2항제1호가목 중 "5년"을 "10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) 제87조의4제2항제 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	법률 제17757호 소득세법 일부		
개정법률	개정법률		
제87조의4(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	제87조의4(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		
의 계산) ① (생 략)	의 계산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 제	②		
87조의7에 따른 금융투자소득			
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			
차례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			
다.	-,		
1. 제8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	1		
투자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			
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(이하			
"금융투자이월결손금"이라 한			
다)			
가.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	가		
전 <u>5년</u> 이내에 발생한 제8	<u>10년</u>		
7조의7제2항에 따른 금융			
투자결손금으로서 그 후			
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			
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			
한 것			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

③・④ (생 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